

서울고등법원 2019. 5. 31 선고 2019나200868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19. 5. 31 선고 2019나2008687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7가합22777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간, 담당변호사 권시영

피고, 항소인유한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앤케이, 담당변호사 김권규, 한예정

변론 종결2019. 5. 17.

판결 선고2019. 5. 31.

제1심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7가합22777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6. 4. 18.자 약정서에 기한 5억 원 및 이에 대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무 및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의 2016. 4. 18.자 증서 2016년 제478호에 기한 6억 원의 약속어음 채무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16. 5. 2. 접수 제3611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우리 법원의 J 법무사 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법무사 J이 부부 간에는 인감증서와 인감을 소지한 것만으로는 대리권을 인정할 수 없으며, 담보 목적 부동산 소유자인 원고의 담보 제공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 사실, 이에 D은 원고가 직장 여건상 직접 면담이 어렵다고 하여, 통화로 갈음하게 되었는데, 당시 J이 통화 상대방인 여성에게 원고의 주민등록번호를 문자 이를 주저하지 않고 맞게 답변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J이 통화한 상대방이 원고 본인임을 뒷받침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위의 사실들만으로 원고가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증거가 없다(제1심 법원 및 우리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일체의 증거들은 물론, 피고의 신청 및 우리 법원의 촉탁에 따라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송부한 문서까지

뒤져보아도 그러한 자료는 찾을 수 없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심준보

판사김갑석

판사김재령

별지